

우송대학교 가족회사 규정

제 정 202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란 우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자문, 경영 지도, 학생의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과제의 공동도출, 실험 및 실습 시설과 장비의 공동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을 말한다.
2. “산업체 등”이란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 그 밖의 협력이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3.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연구소”란 연구수행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기타기관”이란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학협력단과 산학공동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체 등과의 산학연협력 협약은 대학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과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모든 협약체결 결과는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협약명칭) 제3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가족회사협약”이라 하며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은 우송대학교 가족회사(이하“가족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대학과 산업체 등은 협의하여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산업분야별 산학연협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연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양성 강좌 및 산학연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8. 산학연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제6조(협약신청 및 승인) ①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족회사 협약 체결 신청서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협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가족회사협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족회사협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실무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 등과 협의한다.

제8조(제반경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과 산업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약당사자) 협약은 대학 총장과 산업체 등의 대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과 산업체 대표 등의 임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내용 및 효력)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족회사협약서에 따라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공동연구, 위탁교육, 협동강의, 정보교환,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활용 등 상호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대학의 협약당사자와 가족회사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협약당사자의 폐업, 청산 등에 의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목적 달성 또는 계속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성과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의 효과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활동실적용 기준으로 가족회사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의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가족회사의 유형은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와 무료회원제 가족회사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한다.

④ 가족회사 유형 및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유료회원제 가족회사) ① 유료회원제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의 상호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협력 추진 및 가족회사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유료회원제 가족회사는 연회비, 사업참여 분담금, 산학협력단 기부금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에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가족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족회사 부담금, 정부지원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가족회사의 회계처리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정지원기관의 다른 회계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산업분야별 산학연협력협의회) ① 대학과 가족회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분야별 산학

연합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별 가족회사가 중심이 되고 관련 교내·외 연구소 및 공공기관, 기타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1. 대학과 협의회 간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2. 가족회사의 필요사항 의견수렴 및 공통 애로사항 해결책 모색
 3. 가족회사의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4. 세미나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한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
 5. 그 밖에 대학의 발전 및 가족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업무 지원
- ② 협의회의 임원은 3명으로 하며, 가족회사 대표 중 1명을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 2명을 둔다.
- ③ 협의회의 임원은 회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회장의 요구에 의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